

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

(박 주 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3-112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0. 12.

발 의 자 : 박주선, 조기만, 최세진,
한상욱, 김지수, 김희동,
정정희, 홍재희, 최동철

1. 제안이유

최근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범죄로부터 강서구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예방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- 다.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사업(안 제5조)
- 라.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)
- 마. 비밀준수 의무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협조부서 : 의약과
- 다. 입법예고 : 2023. 10. 16. ~ 2023. 10. 20.

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마약류”란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.
2. “약물”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·진단·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정신적,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예방계획의 수립)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

· 남용 예방계획(이하 “예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1.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
2.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
3.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
5.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
6.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
2.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 지원사업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, 사법기관, 의료기관, 약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

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구민·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등 오·남용 예방 추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7조(포상)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·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비밀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2조의2(국가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,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·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